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1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강석주, 김 경,
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태, 김춘곤,
민병주, 박영한, 박칠성,
서준오, 성흠제, 아이수루,
, 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
이민옥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임만균,
최재란, 한 신, 홍국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을 다각화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디자인재단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서울디자인지원센터와 유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호).
- 나.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으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(안 제4조제4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서울디자인지원센터” 를 “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서울디자인지원센터</u>의 운영</p> <p>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~ 8. (생 략)</p>	<p>제4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 디자인창업센터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</u></p> <p>5. ~ 9. (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</p>